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8조의2 삭제)	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803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4. 2.
3. 회 부 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Ⅲ. 검토의견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안 제48조의2 삭제)

개정안은 현행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u> <u>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u> <u>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u> <u>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u>	<u><삭 제></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48조의2는 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③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④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등

4건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존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1)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의2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토 대상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성 역시 각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제48조의2제1호의 여객 운임·요금 신고, 같은 조 제3호의 철도사업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용철도 운영 개선명령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규제라고 볼 수 있음. 여객 운임·요금 신고는 철도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철도사업 개선명령 및 전용철도 운영 개선명

1)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령은 철도서비스의 적정한 제공과 철도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또는 전용철도 운영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들 규제는 철도이용자 보호와 철도안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2014년 이후 세 차례 이상 이루어진 재검토에서도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관리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48조의2제1호·제3호·제4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반면, 제48조의2제2호에 따른 재검토 대상은 부가운임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정상운임의 30배 및 부족운임의 5배로 정한 부가운임의 상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철도사업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부가운임의 실제 부과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부정승차 발생 추이, 부가운임의 억제 효과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법정 상한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운임 상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가운임 상한을 포함한 현행 제48조의2의 규제 4건 모두에 대하여 세 차례 이상 재검토가 이루어져 재검토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결과 >

연번	부처명	규제명	법령	법령명	조문	심사결과	재검토 기한
1	국토부	철도 부가 운임의 징수	법률	철도사업법	10조	현행유지	해제
		⇒ 규제위 검토의견 : 재검토 3회차 이상으로 재검토 실익이 적어 재검토기한 해제					
2	국토부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법률	철도사업법	21조	현행유지	해제
		⇒ 규제위 검토의견 : 재검토 3회차 이상으로 재검토 실익이 적어 재검토기한 해제					
3	국토부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법률	철도사업법	39조	현행유지	해제
		⇒ 규제위 검토의견 : 재검토 3회차 이상으로 재검토 실익이 적어 재검토기한 해제					
4	국토부	철도운임·요금의 신고와 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	법률	철도사업법	9조	현행유지	해제
		⇒ 규제위 검토의견 : 재검토 3회차 이상으로 재검토 실익이 적어 재검토기한 해제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 「철도사업법」상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여객 운임신고, 부가운임 징수, 개선명령은 철도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사업자에 부과하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아 주기적 재검토할 실익이 적으므로 재검토기한 규정 삭제가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82